

의안번호	2209999
의 퇴 인	최보운 의원
회 답 일	2025.5.8.
추계번호	25C24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2 (소송비용의 특례)	(제1항)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8조의2 (소송비용의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¹⁾하게 되므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의 수와 해당 패소자의 소송비용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곤란
 - 또한,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법률구조” 사업 예산으로 4억 9,200만원 편성
 -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실시

[참고자료] “장애인법률구조” 사업 운영 현황

○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본예산(A)	추경(B)	합계(A+B)		
2017	669	—	669	517	77.3
2018	669	—	669	542	81.0
2019	517	—	517	464	89.7
2020	517	—	517	436	84.3
2021	517	—	517	377	72.9
2022	517	—	517	430	83.2
2023	448	—	448	448	100
2024	314	—	314	314	100

○ 지원대상별 법률구조 현황

(단위: 건)

연 도	소송구조 사건수			지원 기관	지원 범위
	계	중증	경증		
2015	3,926			공탁위	등급구분 없음(전부무료)
2016	1,945			보건복지부	등급구분 없음(일부무료)
2017	2,233	1,918	315	보건복지부	중증 : 전부무료 경증 : 일부무료*
2018	1,951	1,316	635		
2019	1,979	1,263	716		
2020	1,179	816	363		
2021	1,223	862	361		
2022	1,268	834	434	보건복지부	등급구분 없음('22.9월~)
2023	1,571	856	715		
2024	1,224	621	603	보건복지부	등급구분 없음('22.9월~)

○ 유형별 법률구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가사	손해배상	임대차	대여금	임금관련	기타	합 계	지원액
2017	234	94	76	466	26	1,337	2,233	517
2018	188	141	54	166	17	1,385	1,951	542
2019	194	127	37	175	27	1,418	1,978	464
2020	111	69	30	107	12	850	1,179	436
2021	134	60	17	114	11	887	1,223	377
2022	101	80	15	97	8	967	1,268	430
2023	111	42	24	95	28	1,271	1,571	448
2024	90	54	15	111	12	942	1,224	314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